

설계자	확인자		
		설계년월일	

도미니카공화국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과업지시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목 차

I. 과업지시서.....	1
1. 개요.....	1
2. 과업기간.....	1
3. 과업내용.....	2
4. 과업의 일반원칙.....	9
5. 과업수행 방법.....	12
6. 과업성과품 제출.....	13
7. 보안대책.....	14
II. 예정공정표.....	16

# I. 과업지시서

## 1. 개 요

□ 과업명 : 도미니카공화국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 □ 과업목적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남서쪽 아이티와의 접경지역인 페데르날레스 주에 3,800ha(1,150만평) 규모의 정부주도 관광단지를 조성(호텔, 리조트, 골프장, 워터파크 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관광단지의 관문공항인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건설을 준비 중
  - 신규호텔 준공일정에 맞춘 2025년 개항을 목표로 1단계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운영자 선정과 2단계 공항 확장사업을 계획
- 이에 따라, 1단계 신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위한 기존 MP검토, 단계별 공항건설/운영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공수요 및 경제성 분석, 사업구조 수립 및 재무적 타당성 검토, 법률 검토를 수행하여 투자 의사 결정에 요구되는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진단하고자 함
-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 신공항 단계별 사업 개발방식 제안 및 운영권 확보 협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 3. 과업내용

#### □ 사업환경조사 (기초자료)

- 기초자료 분석
  - 도미니카공화국 일반현황, 사회경제현황, 교통 인프라 현황
  - 도미니카공화국 국가 거시지표, 신용도, 발전 전망 등
  - 도미니카공화국 내 예상 경쟁공항(푼타카나, 라스 아메리카스) 현황(여객/화물 항공수요, 항공노선, 공항시설, 공항운영, 연결교통 등)
- 제도 및 정책성 분석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중장기 전국 공항 개발관련 주요계획 및 정책방향
  - 도미니카공화국 투자제도 및 유사 투자사례, 공항개발 사례 조사
-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접근도로 현황 및 계획 분석
  - 현재의 시설상태, 운영체계, 수송능력, 한계용량 도달 시기 분석
  - 여객 성향조사, 이용실태 조사, 수단별 평균 수송인원, 수단별 통행량 및 새로운 교통수단의 전환율 분석
  - 대중교통 수단 등 공항-관광단지 간 승객 수송 방안
- 주요 사업주체 분석
  - 현지(발주처) 및 국내 사업주, 예상 투자자 조사
- 관련 선행 보고서 등 기존 자료 검토
  - 페데르날레스 관광단지 개발 마스터플랜(Master Plan) 검토 및 분석
  -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및 관광단지개발 추진현황
  - 페데르날레스 기존공항(카보 로호) 폐쇄 및 향후 이용방안

## □ 항공수요 예측

- 도미니카공화국 항공 시장 및 사업 환경 분석
  - 도미니카공화국 및 인접국가 여객/화물 운송 실적·노선 특성 분석
  - 도미니카공화국 취항 항공사 특성 분석
  - 국외지역의 유사공항(관광지) 주요 사례 조사 및 분석
- 발주처 항공수요/화물수요 예측(Master Plan) 결과 검토
- 항공수요(여객, 화물, 항공기 운항 등) 예측 방법론 제시
  - 2가지 이상(Top-down, Bottom-up 방식 등) 연간 수요예측 모델 개발·비교를 통해 적정 방법 선정
  - 유사사례, 국제기준 등을 참고한 첨두시간 수요 예측 방법론 제시
- 항공수요(여객, 화물, 항공기 운항 등) 예측 결과 제시
  - 연간, 첨두시간 등 항공수요를 최종단계까지 예측
  - 경제·인구 성장 등 불확실성을 고려한 낙관·비관·중립 시나리오별 수요예측
  - 발주처 항공수요 예측 결과 검토 및 보완
- 접근교통량 예측
  - 항공수요 추정결과 토대로 접근 교통량 분석
  - 주차수요 등 수단별 수요 예측

##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입지 및 기존공항 현황자료 분석
- 공항부지 분석
  - 지질/지층, 측량 및 지반조사 실시 및 기존자료 검토·보완
  - 현행 및 예상되는 ICAO 기준변경 적용 장애물 제한표면 내 자연/인공 장애물의 높이 및 위험영향 분석(dwg 파일 제출)
  - 토지이용계획 및 항공기 운항 영향 분석
- 사업 목표 및 기본방향 검토
  - 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적용 공법, 공사 물량 및 공사비, 공사기간, 공종별·연차별 사업비, 사업 시행계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을 종합 검토·수립
  - 기초자료 및 기술분야 조사·분석 결과, 공항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 등을 비교 평가하여 2개 이상의 선정 가능한 대안을 마련·제시 및 타당성 분석 수행
- 단계별 에어사이드 시설계획 수립
  - 부지조성 공법, 주요 구조물의 기본형식, 토량 수급계획 마련(여러 대안별 검토 후 최적안 도출)
  - ICAO 비행장설계 및 운영관련 기준 충족하며, 항공수요, 취항 항공기 기종 등을 바탕으로 운항 안전성, 운영 효율성, 시공성, 향후 확장 가능성을 감안해 활주로·착륙대·유도로·계류장 등 Airside 시설 소요 규모 산정
  - 에어사이드 수용능력, 효율성 증대방안 제시
  - 소음영향 범위 등 환경영향 관련 자료를 연계 검토하여 환경영향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배치 수립
  - 공역 제약사항 등에 따른 활주로 용량 대비 ATC 용량 산출
  - 최적의 항공로·공역·입출항절차(출발·도착)의 신설 방안 제시

- 단계별 터미널·랜드사이드 시설계획 수립
  - 용량 분석, 적정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시설 규모·배치계획 마련
  - 여객터미널은 항공수요를 바탕으로 주요 수속시설, 대기시설 및 기타 시설은 국제기준을 검토하여 기준면적을 제시
  - 국제선 CIQ 시설 등 필수시설의 적정 규모, 위치 등 배치계획 마련
  - 공항 내 기계/전기/통신 및 통합보안시스템 계획 수립
  
- 항행안전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등 지원시설 계획 수립
  - 운항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항공등화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형식, 공법 선정
  -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의 인입계획, 우·오수 배제계획 등 검토
  - 항공수요 등을 감안한 항공유 소요 규모, 적정 비축 규모 산출 및 수급방안을 시설계획에 반영
  - 구조소방대의 위치 및 조류 충돌방지(퇴치) 방안 제시
  - 도미니카공화국 공항 내 스마트공항 구현 현황과 국내 스마트공항 시스템(One-ID, AI-Xray 등) 및 공용여객처리시스템(CUTE) 진출 방안 수립
  - 공항 접근체계(터미널 건물과 차량 출입을 위한 적재 및 하역, 주차시설 등) 수립
  
- 단계별 종합 개발계획 수립
  - 공항 종합 평면/배치계획 수립
  - 시설확장 및 개선계획 수립
  - 건축계획 개념 및 방향, 확장성, 건물배치계획(배치도), 외부공간계획, 교통동선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 설비계획 수립
  
- 단계별 설계·건설 비용 산출 및 시행 계획
  - 단계별 기본설계 실시 및 사업비 산출(국내 및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단가 비교)
  - CAPEX/OPEX 예측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과거 자료, 방법론, 항목 선정 및 산출값)
  - 단계별 건설비용 및 투자시기 등
  - 공사계획을 포함한 전체 사업 공정계획 수립

- 설계/구매/시공 일정, 착공 후 공정기간 및 공정률 등 분석
- 도미니카공화국 인허가 근거법률 및 소요기간 등 분석
- 단계별 공항운영계획 적정성 분석
  - 여객 처리체계(출발/대기 승객을 위한 공간, 출/도착 승객을 위한 동선체계 등) 수립
  - 공항 운영계획 및 공항시설물의 유지/보수계획 수립
  - 운영방향 설정 및 수익증대방안 수립
  - 운영조직 및 운영인원 등 분석, 운영비용 산출
- 환경사회영향평가 분석 및 검토
  - 도미니카공화국 환경사회영향평가 시행결과 분석, 검토 및 보완(항공기 소음, 대기, 수질, 폐기물, 오수, 지역사회 주민영향 등)
  - ICAO/도미니카공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영향과 기술 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현지 법률 검토

## □ 타당성 분석 (재무, 경제)

- 단계별 수익 및 비용 산출
  - 항공수익, 비항공수익 (과거 자료, 방법론, 항목 선정 및 산출값 등)
  - 운영비용 산출 (과거 자료, 방법론, 항목 선정 및 산출값 등)
  - 시설투자에 따른 사용료 인상 시기 및 금액 산출
- 세무 검토
  - Project SPC 설립 관련 세무 및 세제 혜택, 부담금 분석
  - 건설 / 운영 단계별 관련 세무 분석
  - 해외 사업주 투자사업 시 Tax Incentive 제도
  - 외국환 거래 관련 절차 및 제한 분석
  - 주요세제 분석(투자 실행, 건설 중, 운영 중)
  - 이익회수 시 주요 세무이슈
  - 한국 투자자 최적 투자구조 제안(조세제도 반영)



- 단계별 사업구도 및 재원조달
  - SPC 및 사업 참여자 자기자본비용, 부채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 (국가위험, 산업위험, Peer Group, 국가경제지표 등 반영)
  - 부채비용, 자기자본 투입계획/타인자본 조달계획/예비재원 조달계획 수립
  - 발주처 협상 위한 최적 사업구조 제안
  - 최적 투자기간(풋/콜옵션 조건 및 행사여부) 검토, 풋옵션 지분가치 산정 및 절차 제안
  - 부채금융(Debt Financing) 인수 참여 및 위험 헷지 방안 검토
  
- 단계별 재무성 분석
  - SPC 수익성 지표(NPV, IRR, ROE, ROI, 회수기간) 및 안정성지표(DSCR, 현금 과부족 발생여부) 산출
  - SPC와 별도로 사업 참여자 측 수익성/안정성 지표 도출(추가 컨설팅수익, 주주대여금, 우선/보통주 등 반영)
  - SPC 추정 재무제표 산출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 환위험 분석 및 환위험 헷지 방안 검토
  -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 투자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단계별 재무모델(Excel) 작성
  - 사업의 주요 가정사항 및 현지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제 반영된 재무모델(Excel File) 제공
  - 모델 기본가정 적정성 검토(물가상승률, 보험료, 환율, 감가상각 등)
  -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재무모델(한글/스페인어) 작성
  
- 국가위험도 및 사업위험도 분석
  - 사업 리스크 도출 및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
  
- 신청기관의 재무상태 분석
  - 기관의 재무비율 분석을 통한 수익성, 차입금 상환능력, 재무 레버리지 등 분석

- 신청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미치는 영향분석
-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 기관의 자기자본 조달 가능성
  - 추정 부채상환계수(DSCR)로 타인자본 조달 가능방안
  - 운영기간 중 추정 부채상환계수(DSCR) 적정수준 달성여부 전망 및 추가 재원조달금액의 정도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분석 방법론 설정 (ICAO, FAA등 항공관련 국제기구 발간 지침 또는 KDI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등에 따른 적합한 방법론 제안 및 작성 지원)
  - 비용항목 선정 및 비용 산출, 편익항목 선정 및 편익 산출
  -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B/C비율, NPV, IRR등 산정
- 국내경제 파급효과 등 분석
  - 국내기업 수출효과, 국내인력의 고용효과 및 기관 경쟁력 제고 측면 분석
  - 도미니카공화국 내 진출 중이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산업 연계 시너지 효과 분석
  - 기타 파급효과 분석
- 도미니카공화국 경제 파급효과 등 분석
  - (정량적 근거) 세부산출 근거, Cash Flow, 일자리 창출 등
  - (정성적 근거) 후속사업, 관련사업

## □ 법률 검토

- 현지 관련 법규 검토
  -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법률 및 제도 검토
  - 사업 추진 방식의 적합성 검토
  - 현지 SPC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제반 법률 검토

- 관련법규의 위반여부 및 사업영향 검토(기타 페데르날레스 관광단지 개발관련 법, 항공법, 외국인투자법 등)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인허가 제도 검토
- 발주처 협상 위한 최적 사업구조/계약조건 제안
- G2G계약 및 수의계약 근거법률 검토
  - 도미니카공화국 G2G계약 또는 유사사례 조사
  - 본사업 추진을 위한 G2G 계약 검토
  - 소수 지분투자자로 건설 후 운영권 확보를 위한 필요 법률사항 검토
  - 지분투자 시, 이해관계자들 간의 리스크 배분(Risk Allocation) 매트릭스 수립
  - G2G계약 필요성 및 기대효과 검토
  -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건설 특별법 추진 가능성 및 효과
  - 국내 G2G 계약 추진절차 검토

#### 4. 과업의 일반원칙

#####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 과업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성과물 작성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스페인어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영문, 스페인어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제안자 수행> 과업(해당 시)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제안자 수행>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

####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 5. 과업수행 방법

####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또한,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외국 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외국인 전문가로부터 과업 내용에 대한 자문을 별도로 받아야 함. 전문가 선정, 자문내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 현지조사

- 사업대상국의 인문, 자연, 경제,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

### 6. 과업성과품 제출

####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스페인어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

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스페인어로 작성한 최종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수정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수정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



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 II. 예정공정표

항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 사업환경조사		■								
2. 항공수요			■							
3. 기술적 타당성분석			■							
4.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				■						
5. 법률 검토			■							
6. 해당국 정부 요청사항 반영							■			
보고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과업진도율	당기	10	25	25	15	10	5	5	5	
	누적	10	35	60	75	85	90	95	100	